

의안번호	2210388
의 퇴 인	곽규택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4.
추계번호	25F277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빈집 부속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 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4조의2 (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) 신설	○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소유자가 철거한(철거명령 또는 자진 철거)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면제 - 적용기한: 2028.12.31.
2	안 84조의3 (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신설	○ 지방자치단체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빈집정비사업이나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의9제1호 또는 제2호의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정비한 빈집 및 건축된 주택이나 건축물을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(빈집 50% 감면, 건축된 주택 등 면제) - 적용기한: 2028.12.31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4조의2 (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) 신설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84조의3 (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신설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또는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빈집 정비사업에 따라 공공용으로 1년 이상 사용한 빈집 및 건축된 주택 등의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재산세의 세수 감소가 예상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 및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된 빈집 및 건축된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 규모의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참고로 최근 5년간(2019~2023년) 전국의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, 2019년 152만호, 2023년은 153만호를 나타내고 있음

[표 1] 빈집 현황: 2019 ~ 2023년

(단위: 만호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빈집	152	151	140	145	153

자료: 통계청, 「주택총조사」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